

문서번호	보건위생과-6804
결재일자	2016.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조애란	서녹진	代서녹진	04/14 이희영
협 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 계획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 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육성 자금을 처리로 용자·지원함으로써 영업자의 영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21조(식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절 식품진흥기금

2 기금현황

(1) 기금자산 규모

(2015.12.31. 기준, 단위:원)

총액	금융기관 예치금	용자채권 보유액
	공공예금	
1,099,356,228	701,916,228	397,440,000

(2) 연도별 기금용자 실적

○ 구(區) 기금

연도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용자건수	11건	8건	8건	4건	1건	4건	5건
용자액	490,000천원	390,000천원	300,000천원	298,000천원	50,000천원	180,000천원	260,000천원
예산액	500,000천원	400,000천원	300,000천원	300,000천원	400,000천원	300,000천원	300,000천원
집행률	98%	97%	100%	99%	12.5%	60%	86.6%

○ 시(市) 기금

연도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용자건수	8건	3건	2건	2건	2건	-	-
용자액	320,000천원	130,000천원	70,000천원	70,000천원	108,000천원	-	-
예산액	300,000천원	250,000천원	125,000천원	150,000천원	120,000천원	100,000천원	148,000천원
집행률	106%	25%	56%	47%	90%	-	-

3 지원개요

(1) 용자규모: 361,000천원 (區기금: 300,000천원/ 市기금: 61,000천원)

(2) 기본방향

-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영업자 중 자금이 꼭 필요한 자에게 용자 지원
- 식품진흥기금 용자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3) 용자대상

-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한지 1년 이상된자로서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모범음식점, 광진구 맛집·멋집으로 지정된 업소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별표1) 용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용자 (업소수 무관)

(4) 용자종류

용자종류	용자대상	용자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	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 육성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식약청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금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

(5) 용자조건

구 분			용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용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특별용자	육성자금	서울의자랑스려운한국음식점	1%	8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서울의자랑스려운한국음식점	1%	1억5천만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 5년균등분할

(6) 취급은행 : (주)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4 세부용자절차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선착순 마감)

(2) 처리절차

- ① 용자 신청
- ② 용자 가능여부 심사(시설개선 적격 여부, 담보능력 심사 등)
- ③ **(경합시)** 자치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용자대상자 확정 (구 기금)
용자대상자 추천 (시 기금)
- ④ 용자 대상자 선정 통보 (은행/영업주)
- ⑤ 은행으로 용자금 대하 및 영업주 대출

(3)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3호서식)
-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완료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음식의 종류와 가격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

(4)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5 행정사항

(1) 대외적 홍보 강구

-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아차산메아리, 일간지** 보도자료 배포
- 기존영업자 교육,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 회의시 홍보자료 배부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용자 안내문자 발송
- 각종 홍보·안내책자 제작시 기금용자 지원사업 적극적 홍보

(2) 사후관리 강화

- 용자대출업소에 대하여 지도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지도·확인점검하고 폐업 등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42조(용자금의 반환)에 의거 위반사유가 발생할 시 상환기간 전이라도 조기상환 조치하고 서울시 및 대출취급은행에 통보

(별표2)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 대상

- ① 용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②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때
- ③ 주류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때
- ④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 또는 영업시설을 타구로 이전한 때

(3) 공사 완료 후 정산보고 철저

- 상담시 사후 제출서류인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완료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등의 제출의무를 충분히 고지
- 공사대금 지출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필히 첨부

- * 붙임 1. 용자신청서 서식 각 1부.
2. 신용보증재단 제출서식 1부.
3. 용자안내 홍보문 1부. 끝.

사업이행약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약합니다.

1. 용자받은 후 용자금은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2. 용자받은 후 본업소를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모범음식점, 자랑스런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용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5. 대출당시 관할구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구청에 사전 신고 및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6. 용자받은 육성자금(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 행위, 경마·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여행비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7. 영업장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겠습니다.
8.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식품진흥기금 용자확인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1. 용자대상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2. 용자내용

확정기관		추천금액	
용자종류		대출예정은행	
자금종류			
대출금리		상환방법	

위와 같이 용자가 추천되었음을 확인함.

2016 . . .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광 진 구 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 안내

□ 용자대상

-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하는 자로서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용자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용자 (업소수 무관)

□ 용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3천만원 이내)

※ 단, 용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하며(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시설개선) 각 1부.
- 문의 : 보건위생과(450-1911)

2016. 4. .

광진구청장